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54호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의3 제6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좌석·좌석등받이 및 안전띠

나. 팔걸이·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

별표 5의3 제7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란 나목 중 “국제 기준 등에”를 “국제기준(ISO 10542-1)에”로 하고, 같은 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머리지지대와 등받이를 설치하여야

한다. 다만, 머리지지대와 등받이가 설치된 전동 휠체어(국제
기준 ISO 7176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)를 대상으로 하는 자
동차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와 등받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
다.

다. 머리지지대와 등받이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
규칙 [별표 1의2] 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